

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의회운영위원회

심사보고서

2025. 6. 30.(월)



의회운영위원회

목 차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	3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5
3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4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	9
5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	12

심 사 보 고

-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.
-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전에 대한
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이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」은
달성군의회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
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
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.
-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은
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하며,
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
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.
- 다음은 신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
조직개편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에 반영하여
내실 있는 의안 심사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.

- 다음은 김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
전부개정규칙안」은
행정안전부 표준(안)에 따른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
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
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.

- 다음은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」은
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
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여
원활한 회의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.

-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
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0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이연숙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- 상정 및 의결: 2025년 6월 25일

2. 제안사유
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,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, 의회 운영에 관해 산재한 조례·규칙을 묶어 의회 운영의 근간으로서 역할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본이념·원칙·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장)
- 의원 등록·의석배정·사직·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의장·부의장 선거, 임기,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장)
- 위원회 설치·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장·제5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규정된 내용 중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, 이와 함께 의회 운영에 관해 산재한 조례·규칙을 통합하여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1장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의 기본이념과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2장과 제3장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분리한 내용으로, 안 제2장에서는 의원 등록·의석 배정·의원 사직·의원의 자격심사 등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3장에서는 의장·부의장 선거와 임기,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- 안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달성군의회회의 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특히 의원 연구단체 및 법률고문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달성군의회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의회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,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4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박주용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- 상정 및 의결: 2025년 6월 25일

2. 제안사유

- 의회사무국장의 소관 사무 중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하며,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, 체계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국장의 사무 분장 내용 간소화(안 제3조제2항)
- 의회사무국의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겸임 규정 개정 (선임전문위원→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) (안 제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소관 사무에 대한 조문상 용어를 정비·통합하고,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겸임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사무 분장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.
- 또한 기존 규정에 명시된 ‘선임전문위원’에서 ‘선임’의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업무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3항에서는 ‘선임전문위원’을 ‘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’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- 이번 개정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, 본 규칙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1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신달호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- 상정 및 의결: 2025년 6월 25일

2. 제안사유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 사항 반영(안 제8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조직이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에 국 명칭이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- 집행기관의 개편된 조직을 반영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2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김보경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- 상정 및 의결: 2025년 6월 25일

2. 제안사유

- 행정안전부 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’ 등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·사후관리 강화, 비용지출 제한,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·제8조·제9조)
-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·게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참고자료: 「지방의회 공무출장 규칙 표준(안)」(행정안전부)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’ 등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, 달성군의회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4조·제8조·제9조에서는 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출장의 사전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,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기준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.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, 공개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수렴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안 제13조에서는 출장자가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, 출장 예산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이처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본 규칙의 전부개정은 행정적·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3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최재규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- 상정 및 의결: 2025년 6월 25일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등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 개회식 및 폐회선포에 관한 사항(안 제1장)
- 회의의 개폐·의안 회부·심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위원회 운영 및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장)
- 예산안등 및 결산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장)
-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·답변에 관한 사항(안 제5장)
- 질서와 징계에 관한 사항(안 제6장·제7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은 당초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0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, 규칙이 다소 방대하고 무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에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를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,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외에 의원 등록·의석 배정·사직·자격심사 등 의원에 관한 사항과 의장·부의장 선거 및 임기 등 의장·부의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.
- 그 외에 안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, 조문이 제외됨에 따라 조문번호 등 형식적인 부분만 정비하였습니다.
-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규칙 제명에 부합하도록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